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2년 12월 10일

나. 청 원 자 : 89명(고아읍 봉한리 698-1번지 이태봉외 88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12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12월 18일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김 수 민 의원

나. 청원내용

- 청원인은 구미지역 법인택시 근로자들로서, 2010년 4~5월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5년내 35대 감차로 조사된 이후, 4공단 지역의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과 KTX 개통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도심의위원회에서 재산정 승인을 받아 2011년 10~11월 용역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단체의 불응으로 중단된 용역조사를 완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참고사항

○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국토해양부)

○ 택시 총량제 재산정은

- 시·도지사의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5년 주기) 이후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4항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 ①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 ② 사업구역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 ①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 택시총량제 산정 시기

- 총량제 산정 : 매 5년 단위 실시
- 총량제 재산정 : 수송력 공급계획 변경 필요시

○ 2010년(2차) 총량제 실시 결과(매 5년 단위 실시)

- 조사기간 : 2010. 4월 ~ 5월
- 실시결과 : 35대 감차 (1,773대 ⇒ 1,738대)
- 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10. 12. 28

○ 2011년 총량제 재산정 실시

- 실시배경 : 경상북도 2010년 택시총량제 심의결과 통보시("10.12.29)
"필요시 총량제 재산정 가능" 명시
- 조사기간 : 2011. 10 ~ 12월
 - 개인택시 시지부 총량제 재조사 거부 및 조사방해로 법인택시만 조사
 - 개인택시 조사불응으로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법인택시 조사자료만으로 산정 가능(국토해양부 답변)
- 소요예산 : 13,600천원
- 재산정 결과 : 감차 8대 (법인택시 자료만 반영 조사)
- 총량제 재산정 결과 심의의결 ⇒ 도 민생경제교통과 ('12. 2. 15)
-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변경 승인 요청
 - ※ 총량제 재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 사항임
- 국토해양부가 구미시에 변경 승인 불가 통보 ('12. 3. 13)
 - ※ 사유 : 구미시의 재산정 사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변경승인 불가.

4.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건은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698-1번지 이태봉외 88명으로부터 접수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 요구』 청원의 건으로서,
- 택시총량제의 법적 근거에 의하면,
택시 총량제 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 제3항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매 5년마다 시·도지사는 수송력 공급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동 계획에 의거 시장·군수가 총량제 산정을 실시하며,
- **택시 총량제 재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 상기 법적 근거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1차 총량제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 2차 총량제를 실시하여 총1,773대에서 35대가 감차된 1,738대로 2010.12.28.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나,
- 2010. 8.26. 구미시 법인택시(노조대표 이태봉외3)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0.12.29. 경북도의 총량제 심의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 >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등에는 택시노조 등 택시운전자가 총량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는바, 시·군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재산정하여 심의 요청 하시기 바람

- 구미시에서는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위하여 2011년도에 13,600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2011년 10월~12월까지 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총량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개인택시가 조사에 불응하여 법인택시로만 조사를 실시하던 중,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법인택시 자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 그 재산정 조사결과(법인택시 재산정조사 자료만) 8대 감차로 확인되었고, '12. 2. 15 경상북도에 심의 의뢰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사유” 요건 미비로 재산정 조사결과는 “변경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음.
- 그러므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요구』 건은 3차년도(2015년) 택시 총량제 산정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향후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 「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附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붙 임 : 의견서 1부.